



사단법인 경상남도박물관협의회  
THE MUSEUM'S ASSOCIATION OF GYEONGNAM PROVINCIAL

# 정 관

2012. 2. 7

사단법인 경상남도박물관협의회

## (사) 경상남도 박물관협의회 정관

2007년 2월 8일	경상남도지사인가
2008년 2월 27일	1차 개정
2009년 2월 16일	2차 개정
2010년 4월 9일	3차 개정
2011년 7월 15일	4차 개정
2012년 2월 7일	5차 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및 용어의 정의)

- ①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경상남도박물관협의회”라 하고(이하 본회라 한다).  
국제 명칭은 THE MUSEUM'S ASSOCIATION OF GYEONGNAM PROVINCIAL(MAGP)라 한다.
- ② 본 정관에서 박물관이라 함은 박물관, 미술관, 자료관, 전시관, 동물원, 식물원 등을 포함하며, 박물관 진흥법상의 용어사용례와 동일하다.

#### 제2조 (사무소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 소재지는 경상남도에 둔다.

#### 제3조 (목적)

본회는 비영리 목적의 박물관·미술관 협의체로서 건전한 활동을 통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내의 박물관·미술관 상호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및 도내 모든 문화예술단체의 제도적 보호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건전한 박물관·미술관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2. 경상남도내의 박물관·미술관과의 자료교환 및 협조사업
3. 연구발표회, 학술지 및 회지 발간에 관한 사업
4. 경상남도내의 박물관·미술관 특별전 지원 사업
5. 박물관·미술관 전문직원에 대한 교육 및 양성
6. 국내외의 박물관·미술관들과의 교류
7.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 제5조 (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 (이익의 제공)

-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 제2장 회 원

### 제7조 (회원의 자격)

-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기관으로써 본 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 정회원 : 해당 관청에 등록된 경상남도 소재의 박물관·미술관의 대표자(설립자, 관장, 학예사 또는 대표로 위임받은 자)로 한다.  
단, 국·공립 및 대학박물관의 경우는 정회원으로 할 수 있다.
  2. 준회원 : 경상남도 소재 미등록된 박물관·미술관의 대표자(설립자, 관장, 학예사 또는 대표로 위임받은 자)로 한다.
  3. 특별회원(명예회원)  
회원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직 관장, 학예사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와 본 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및 단체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특별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재·경 운영분과위원 및 자문위원, 고문 등을 포함).
- ② 본회 회원의 가입요건, 절차 등은 필요한 경우 운영내규로 정한다.

### 제8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선거에 관한 권리는 정회원만이 가진다.

### 제9조 (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참석,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입회비,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제10조 (회원의 자격 상실)

- ① 본회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회원이 본회 탈퇴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였을 때
  - 2. 회원 기관이 해산되었을 때
- ②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본회에 이미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이나 그 밖의 기여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없다.

### 제11조 (회원의 상벌)

-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견책·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3장 임 원

###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인
- ② 직전회장 1인
- ③ 부회장 2인
- ④ 감사 2인
- ⑤ 이사 9인 이내

### 제13조 (임원의 선임)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단, 직전회장은 당연직 임원으로 총회에서 선출한 것으로 본다.
-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선출한다.
- ④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결원 임원의 보선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이 때 후임자는 이사 2인 이상의 추대를 받은 자로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14조 (임원의 해임과 사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④ 임원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는 사직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 (임원의 선임 제한)

-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 제16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원이 소속 박물관으로부터 관장 또는 학예사 직에서 면직된 경우에는 소속박물관의 후임자 및 직무대리(협회소속관의 대표자)가 승계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7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1인을 선임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4장 총 회

### 제1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9조 (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및 이사회 결의나 감사의 요구, 회원 2/3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결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1인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④ 기타 특수한 상황에는 유·무선 전화를 통해 의결권을 위임받을 수 있다.

### 제21조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주요사항

### 제2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5장 이 사 회

### 제24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사회장을 겸임한다.

### 제25조 (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26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1/2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1인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7조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제2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자산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의결사항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단, 임원의 면직 시에는 업무의 집행정지를 포함 할 수 있다)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9조 (이사회 의결제척)**

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는 제23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와 같다.

### **제6장 재정과 회계**

#### **제30조 (재원)**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회비
2. 지원금
3. 보조금 및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 **제3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2조 (예산편성)**

본회의 수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33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4조 (감사)**

본회 감사는 회계감사를 비롯하여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35조 (임원의 보수)

본회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나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회의비, 출장비, 감사 수당 등)는 지급할 수 있다.

## 제7장 사무부서

### 제36조 (사무국)

- ① 본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관장하며, 협의회 전반에 걸친 사업을 회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 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8장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 제37조 (명예회장 위촉)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협회발전에 상당한 공을 세웠을 때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거쳐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 제38조 (고문위촉)

박물관 및 미술관 발전에 기여한 사회저명인사를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거쳐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경상남도 소재 국립김해박물관장, 국립진주박물관장은 당연직고문으로 한다.

### 제39조 (자문위원)

- ① 본회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 ③ 자문위원은 총회 및 이사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9장 보 칙

### 제40조 (법인해산)

-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제41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42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한다.

**제43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1. 회원의 입회 절차와 입회비
2. 사무국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술대회, 학술지 발간 등 중요사업의 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관에 규정된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